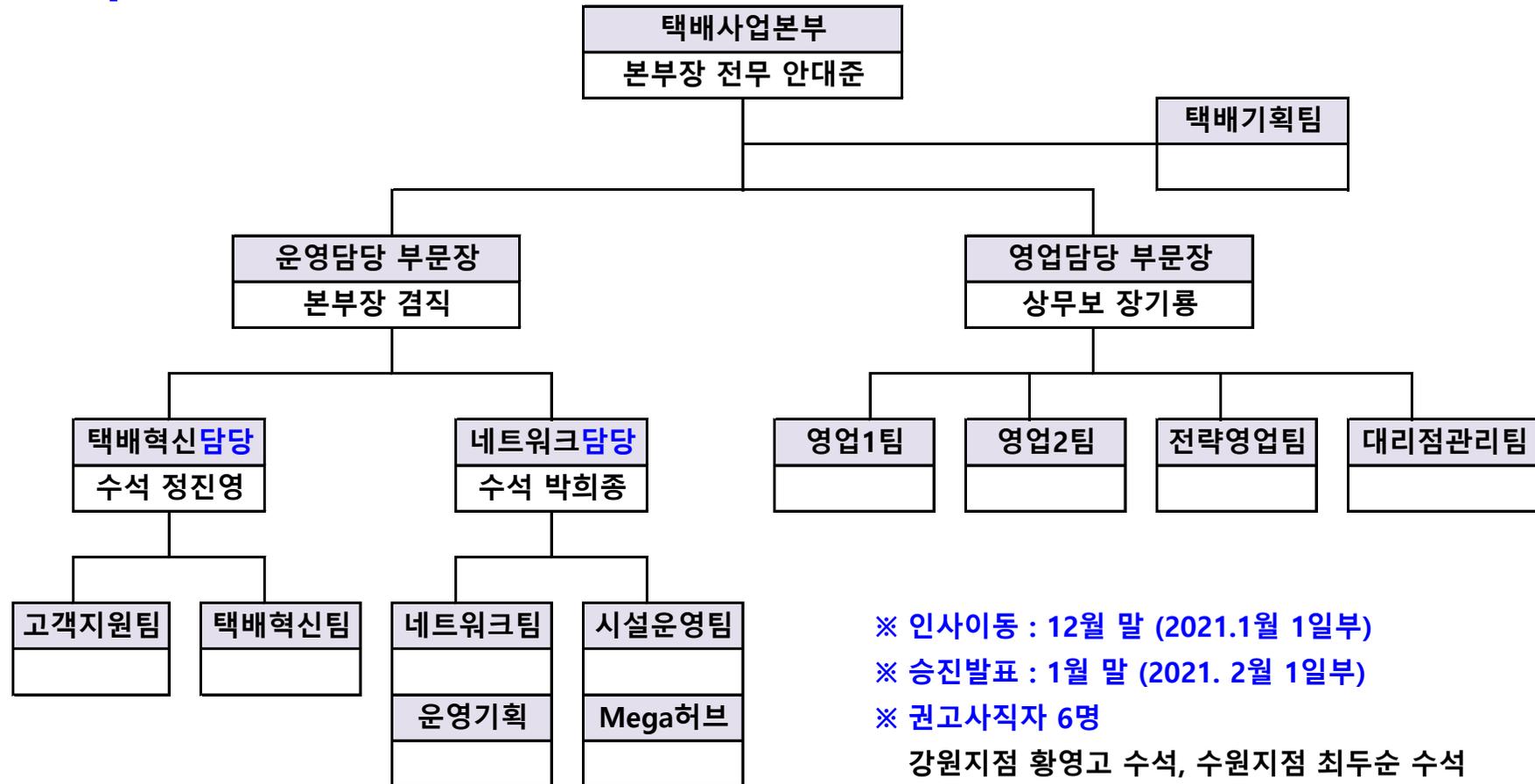


본사 조직편제 변경

2020. 12. 10

[조직 개편] 12/8일자



※ 인사이동 : 12월 말 (2021.1월 1일부)

※ 승진발표 : 1월 말 (2021. 2월 1일부)

※ 권고사직자 6명

강원지점 황영고 수석, 수원지점 최두순 수석
 군포지점 김현식 수석, 군포지점 임원목 수석
 천안지점 한광수 수석, 인천지점 시진우 책임

화물사고 처리지침 개정안

[주요내역 발취]

1. 보상합의 : 개인택배건은 50만원 이하시 고객이 구매한 실구매가(결제금액)으로 합의
2. 차량 하차시 무너뜨림에 의한 파손 적발 3회 이상시 100% 귀책처리 (신고점소 면책)
3. 수기운송장 상세주소 (신주소 + 구주소) 미기재 분실 : 주소 미기재 50% + 배송점 50%
4. 증빙서류 및 합의서 허위 작성 적발시 100% 귀책 처리 + 신고점소 3만원 포상
5. 발송후 분실 (구간, 셔틀, 터미널內) : 발송점 50% + 도착점 50%
6. 적입 행랑 도착 스캔 미작업 분실시 : 발송점 50% + 도착점 50%
7. 오분류 분실 : 원인제공 점소 30%(식품 40%) + 최종 도착 스캔점 70% (공동 집배센타는 점소 균등 처리)
8. 배송 후 분실 : 배송점 100% (단, 사진전송시 80% 면책 적용)
9. 오손, 파손 물품 임의 반송 : 반송 점소 귀책 100% (화물사고 확인서 등록 면책 미적용)
10. 취급주의 품목(한약류 외) 파손시 : 집하점 100% 귀책
11. 분류코드 미/오기재 : 집하점 100% 귀책
12. 상세주소 미기재로 인한 지연/부패 : 집하점 50% + 미처리 배송점소 50%

- 개정일자 : 2021년 1월 1일부 적용

- 협의회 내용확인 후 확인 공문 발송 필요 (12/11일 금요일 오전內)

사회적 합의기구 출범

[제1차 실무회의 개최 관련]

- 일시 : 2020년 12월 15일 오후4시 (향후 격주마다 회의진행 예정)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348호 (을지원국 회의실)
- 대리점측 참석자 : (사)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 이사장 김종철 (현 CJ대한통운연합회 회장)

<제1차 논의 의제>

1. 택배 분류업무 명확화
2. 주 5일제 도입 및 적정 작업시간 규정 등 작업조건 개선
3. 택배기사 적정 수수료 보장을 위한 유통-택배업 상생방향
4. 택배산업 갑질 근절을 통한 공정한 산업구조 확립

<택배사 회장단 회의 추진>

- 일시 : 2020년 12월 11일 오후 4시
- 방법 : 화상회의 (App zoom 다운로드 후 회원가입)
- 주제 : 제1차 실무회의 개최관련 의견 협의
- 참석대상 : 각사 대리점협의회 회장 & 사무국장

<제1차 논의 의제 관련 입장정리>

1. 택배 분류업무 명확화

- 자꾸 분류란 용어를 나오는데, 분류란 터미널이나 집배센터 등에서 이루어지는 지역별 분류 작업과 상호간에 물량을 연계하는 과정을 표현하는 말로 분류는 아웃소싱 형태로 협력업체 협약을 맺고 진행중이며
- 택배사원들이 오전에 하차라인을 따라 움직이는 전체 물량 중 본인의 물량만 골라서 차량 후면에 적재한 후 원하는 배송순서대로 차량에 적재하는 업무로 분류가 아니라 배송화물 인수로 배송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작업임

지금 노조측에서 무임금 공짜노동이라고 문제를 삼고 있지만 제3의 별도 인력을 투입해서 택배기사별로 배송물량을 골라서 따로 적재를 해준다 해도 어차피 또 본인이 원하는 배송순서대로 세부 분류를 하고 다시 또 상차작업을 해야 하는데 과연 이게 합리적인 작업방법이고 실제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인 듯 씩음

- 차량 1대당 사용할 수 있는 유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분류장 현실을 감안할 때 좁은 공간에 별도의 분류인력이 추가로 들어가 작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 결국 집배송수수료 외 배송화물의 인수인계 작업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해달라는 취지로 해석됨 (수수료 체계변경 필요 ; 집배송수수료 + 화물인수인계비용)

2. 주 5일제 도입 및 적정 작업시간 규정 등 작업조건 개선

택배사원의 업무FLOW는 특성상 배송화물을 인수하여 배송출발을 한 이후부터는 택배기사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 1) 오전 자신의 화물인수 및 적재 (화물이동 파악을 위한 스캔작업)
- 2) 배송 및 집하 업무 동시 수행
- 3) 집하 물량 및 현차불 운임에 대한 인수인계

따라서 인위적인 배송권역이나 배송물량에 대한 제한선을 적용하는 방법 이외에는 작업시간에 대한 논의 자체가 무의미한데, 택배기사들은 근로시간은 줄여 달라하면서도 실제 배송권역이나 배송물량을 인위적으로 하향 조정할 경우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스스로가 이를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형편임

- 원천적으로 주 5일제 도입을 찬성

(대형 홈쇼핑과 같은 거래처들이 휴일 출고를 요청하지 못하도록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

- 아파트 단지나 오피스텔 등 택배물량이 많은 곳에는 택배함을 확대 설치하고
- 지하 주차장의 높이 개선
- 지상 도로를 이용해서 배송할 수 있도록 택배차량의 진입에 대해 예외적용 할 수 있도록 입주자협의회에 권고 시행 등

<제1차 논의 의제 관련 입장정리>

3. 택배기사 적정 수수료 보장을 위한 유통-택배업 상생방향

현재의 택배단가 2,240원으로 수익을 나누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있기에 적정 수준으로의 택배단가 인상만이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하는 기본 전제 조건이며 본사와 대리점, 택배기사 모두가 합리적인 수익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택배요금고시제 등의 방법을 통해 택배 운임을 현실화가 최우선 조건
(택배기사들의 배송량 감소 + 수익성 개선)
- 본사도 분류환경개선이나 복리 부분에 또 다른 투자를 지속 시행할 수 있을 것임
- 택배서비스업이 대국민생활밀접형 서비스로 공공의 영역에 포함시켜 기간 산업으로 인정해 줘야 함 (각종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분류장 사용을 위한 용지제공 등)
- 홈쇼핑 등의 대형 거래처들이 우선 솔선수범하여 적정 택배운임을 지불하고 택배업체간의 경쟁을 유발하여 단가를 낮추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함

4. 택배산업 갑질 근절을 통한 공정한 산업구조 확립

현재 택배 대리점을 대표할 수 있는 법적 합의기구가 없는 관계로 이에 대한 논의나 협의 자체가 어려워 개선 노력을 하는게 한계가 있었다 사료됨
(각 택배사 대리점협의회가 주도하여 추진중인 "사단법인 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에 대한 법적 인가시 정식 법인설립을 통해 협의 및 구조적인 문제 해결 가능)

1) 택배사 - 대리점간

택배가 장치산업이며 네트워크 산업인 만큼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데 본사가 사실 전부 부담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 보니 대부분 일정 지역으로 나눠 대리점이라는 형태의 아웃소싱으로 운영 발전되어오고 있다 판단됨. 대리점 입장에서는 자체 분류장과 사무실 구축, 분류장비와 전산장비 마련 등에 상당한 금전적 투자를 감당하고 있으나 대부분 1년~2년의 단기 계약으로 본사가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택배기사(지입)들이 원하는 고용안정과 동일하게 대리점도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마련이 필요함

- 매출부진, CS지수 하락 등을 사유로 분구 또는 타 대리점과의 흡수합병을 요구하는 사례
- CS평가제 등을 통해 일부 수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사례 등
- 택배기사에 대한 표준계약서와 더불어 대리점 위스탁계약서도 동일하게 표준계약서가 도입되어야 함

<제1차 논의 의제 관련 입장정리>

4. 택배산업 갑질 근절을 통한 공정한 산업구조 확립

2) 거래처 - 택배사간

- 대형홈쇼핑 - 서비스 지수에 따른 운임 차등 지급
- 백마진 요구
- 고객들로부터 수령한 운임의 일부를 일정 명목으로 제하고 낮은 단가로 계약하는 온라인 쇼핑몰
- 박스 파손이나 부분 파손시 전액 배상 요구
- 집하 출고를 담당할 인력을 파견 근무시키는 업체
- 배송지역이나 반품회수 지역시 페널티를 물리는 업체
- 당일 미출고시 페널티를 적용하는 업체
- 지게차를 지원을 요구하는 업체
- 명절에 택배접수 알바 비용을 요구하는 대형 마트 등의 업체

3) 대리점 - 택배기사간

우선 택배기사의 6년 고용보장 및 안전/건강관리, 휴식 제공 등 대리점의 권한을 벗어나는 부분에 대한 법적 의무 적용이 우려됨

현재 택배기사 채용방식은 크게 두가지로

1) 위수탁 계약을 맺고 업무중인 택배기사들의 지인 추천 : C대한통운 대리점

(배송 밀집도가 높고 수익이 높아 대기자가 줄 서 있음)

2) 벼룩시장 등의 지역신문을 통한 구인 : 기타 택배사 대리점

(C대비 상대적으로 밀집도 낮아 노동강도가 쉼고 수익성이 뒤져 구인에 어려움이 있음)

- 주선 & 알선업체는 거의 없음

일부 대리점에서 발생하는 갑질사례도 있지만 대부분의 대리점들은 택배기사들이 행여라도 그 만들까 전전긍긍하는 사례가 훨씬 더 많은 상황임을 인식해야 함

상생기금 운영 관련

1. 상생기금 관련

집배송 매출이 아닌 배송 수수료에서 박스당 본사와 대리점이 각각 10원씩을 상생기금으로 적립하여 운영하는 방안으로 본사에 제안을 했으나 영업담당 부문장과의 간담회에서 과거 사례를 들어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다각적인 방법으로 다시 한 번 살펴보고자 함

[협의회 제안 의견]

각 지부별로 나누어 개최된 제12기 1차 전국이사회회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배송수수료에서 10원씩을 부담하자는 취지로 결정됨

1) 기금 마련 방안

- ex) 대리점 배송수수료 10원 적립 + 본사 10원 적립 = 총 20원 적립
- 연간 4억 5천만 박스 규모임을 감안할 때 약 90억원 정도 예상됨

2) 기금 운영 방안

(1) 적립금 20원중 18원을 대리점 분류환경 개선에 재투자

연간 4억 5천만 박스 규모임을 감안할 때 약 81억원 수준

- 집배센타/자가 분류장 하차비 지원 : 기존 60억 + 추가비용 연간 70억 = 130억
- 배송화물 분류 인력지원 : 연간 170억 / 합 300억중

(2) 적립금 20원중 2원을 대리점 상생기금으로 적립하여 운영

연간 4억 5천만 박스 규모임을 감안할 때 약 9억원

- 본사가 관련 업무를 협의회에 아웃소싱하는 형태의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 / 비용정산 실시

[본사 의견]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배송수수료 차감보다는 기타운임제도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임

1) 전제 조건

- 배송수수료에서 10원을 차감할 경우 예상되는 금액(연간 45억원) 수준에서 기타운임을 결정하여 적용
- 현장, 구간, 셔틀 등 정액제로 운영되는 **협력업체에 대한 수수료 변동은 없음**
- 기타운임 적용시 택배시장에서 영업경쟁력을 잃어버릴 수 있는 **저단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수수료 인상 적용**
ex) 2~3% 정도 추정
- 추후 거래처들과의 협의를 통해 택배사원의 복리후생 강화 등의 **상생기금 명목으로 요금인상 협조 요청**
ex) 30~50원 정도
- 2021년 하반기 **수수료체계 재조정을 통한 배송수수료의 합리적인 인상 추진**
ex) 20~30원 정도

2) 기타운임 적용시 문제점

구분	변경 내용	비고
수수료 체계	- 현재도 복잡한 구조가 더욱 어려워져 대리점은 정산내역 확인이 불가	
개발 수수료	- 수수료 요율이 동일해도 기본운임이 변함에 따른 전체 수수료 금액 하락	
집하 수수료	- 특정 운임구간의 수수료 요율 변경 으로 수수료 금액 하락	
	- 수수료 요율이 동일해도 기본운임이 변함에 따른 전체 수수료 금액 하락	
배송 수수료	- 특정 운임구간의 배송최저정액제 요금 변경 에 따른 수수료 금액 하락	
기타	- 자차셔틀 수수료(정율 적용)의 차감 발생	
	- 집하 위주 대리점의 부담금이 너무 커져 영업경쟁력 하락 우려	
	- 영업 기여도가 낮은 배송 위주의 대리점들만 추가 이익을 얻는 구조	

3) 기타운임 30원 적용시 수수료 변화

○ 기본운임 변경에 따른 수수료 변동(30원 기준)

※ 특화점소 제외

(단위 : 천박스, 백만원/VAT포함)

구분		합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비고
집하물량	합계	199,344	31,030	34,283	33,293	30,949	34,993	34,796	
	직영	30,867	4,822	5,402	5,061	4,779	5,119	5,683	
	위탁	168,477	26,208	28,881	28,232	26,170	29,873	29,112	
상생지원금 (30원/Box)	합계	5,980	931	1,028	999	928	1,050	1,044	
	직영	926	145	162	152	143	154	171	
	위탁	5,054	786	866	847	785	896	873	
기존 수수료	합계	270,458	42,385	44,966	45,295	40,203	50,276	47,334	
	개발	28,312	4,359	4,785	4,729	4,336	5,144	4,960	
	집하	59,051	9,060	10,013	9,780	8,729	10,894	10,575	
	배송	183,095	28,966	30,168	30,786	27,137	34,238	31,800	
변경 수수료	합계	266,317	41,748	44,269	44,600	39,595	49,506	46,598	
	개발	27,942	4,301	4,722	4,667	4,279	5,078	4,896	
	집하	56,334	8,648	9,550	9,323	8,331	10,391	10,092	
	배송	182,041	28,799	29,998	30,611	26,986	34,037	31,611	
수수료 차액	합계	-4,142	-636	-697	-695	-608	-770	-736	
	개발	-370	-57	-63	-62	-58	-66	-64	
	집하	-2,718	-412	-464	-458	-398	-503	-483	
	배송	-1,054	-167	-170	-175	-152	-201	-189	

[적용 예시]

(단위:원, VAT포함)

구분	청량리		김포		둔산		비고
	집하	배송	집하	배송	집하	배송	
수량	110,000	57,668	150,000	50,898	47,000	130,478	
매출	266,000,000	134,025,602	354,000,000	115,337,346	103,000,000	286,690,369	
상조회비		154,026		135,337		306,690	

1) 청량리대리점 (집하 6.6 : 배송 3.4) 2) 김포대리점 (집하 7.5 : 배송 2.5) 3) 둔산대리점 (집하 2.7 : 배송 7.3)

구분	수수로 차감	기타 비용		공제합계	분류비 수령액		
		개발	집하			배송	상조회비
청량리(대)	기타운임 30원 적용시	270,798	1,926,699	139,382	미공제	2,336,879	1,038,024
김포(대)		396,062	873,835	125,864		1,395,761	916,164
둔산(대)		116,906	388,031	503,855		1,008,792	2,348,604

※ 원래 협의회에서 제안한 배송수수료 10원 적용시 연간 45억원 수준이었으나 본사안 적용시
 - 연간 83억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 집하가 많은 대리점에서 비용을 많이 내서 배송이 많은 대리점을 도와주는 방안으로 보여짐
 (집하 위주 대리점 : 분류비 18원을 지원받아도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됨)

<저단가 수수료 일부 인상 적용시>

- 내년 6월까지의 이런 체계로 가고 2021년 7월 수수료 변경시 저단가 부분에 대해서는 CJ 수준으로 맞춰주겠다는 의도로 보임

구분	수수로 차감	기타 비용		공제합계	분류비 수령액		
		개발	집하			배송	상조회비
청량리(대)	저단가 부분의 수수료 인상적용시 (70% 감안)	189,558	1,348,689	139,382	미공제	1,677,630	1,038,024
김포(대)		277,243	611,685	125,864		1,014,792	916,164
둔산(대)		81,834	271,622	503,855		857,311	2,348,604

※ 이경우 전체 금액은 연간 62억 정도 추정됨

[협의회 기타 의견]

배송수수료를 차감하거나 기타운임 적용 등을 통해 기본적인 수수료체계의 틀을 변경하는 것보다는 현재의 상황에서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상조회비를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해봤음

1) 전제 조건

- 대리점 위수탁계약서 계약조항에 의거 **100% 상조회 의무가입**
- **지역이사 + 지점에서 상호 협조하여 관내 대리점들에 대한 이해와 협조 요청 (12월內)**

2) 적용방안 (현행 배송매출만 적용시)

(1안) 박스당 기본회비 추가

- **배송 박스당 10원의 기본회비 추가 적용**
- 월간 3천 7천만 박스 * 10원 = 월간 3억 7천 / **연간 44억원** 수준

(2안) 배송매출에 대한 상생기금 적용

- 현재 기본회비(일반 : 배송매출의 0.1%, 특화 : 0.2%) 이외 기금 명목으로 **0.45% 별도 적용**
- 월간 840억원 * 0.45% = 월간 3억 8천 / **연간 45억원** 수준

(단위:원, 박스, VAT 포함)

구분	배송박스	배송매출	상생기금 9억기준				상생기금 45억기준	
			대리점 자체 운영시		본사 50% 분담시		대리점 지원금	
			박스당 2.3원	배송매출 0.1%	박스당 1.2원	배송매출 0.05%	박스당 10원	배송매출 0.45%
합계(월간)	36,690,102	83,854,091,181	84,387,235	83,854,091	44,028,122	41,927,046	366,901,020	377,343,410
연간	440,281,224	1,006,249,094,172	1,012,646,815	1,006,249,094	528,337,469	503,124,547	4,402,812,240	4,528,120,924

※ 필요시 배송매출 이외 **집하부분의 매출까지 확대하여** 운영하는 방안 포함 검토

[적용 예시]

(단위: 원, VAT포함)

구분	청량리		김포		둔산		비고
	집하	배송	집하	배송	집하	배송	
수량	110,000	57,668	150,000	50,898	47,000	130,478	
매출	266,000,000	134,025,602	354,000,000	115,337,346	103,000,000	286,690,369	
상조회비		154,026		135,337		306,690	

1) 청량리대리점 (집하 6.6 : 배송 3.4) 2) 김포대리점 (집하 7.5 : 배송 2.5) 3) 둔산대리점 (집하 2.7 : 배송 7.3)

구분			수수료 차감			상조회비 이용		공제합계	분류비 수령액
			개발	집하	배송	기본회비	기금 차감		
청량리(대)	기타운임	본사안 100%	270,798	1,926,699	139,382			2,336,879	1,038,024
		저단가 조정시	135,399	963,349	139,382			1,238,130	
	상조회	박스당10원				154,026	576,680	730,706	
		기금 0.45%				154,026	603,115	757,141	
김포(대)	기타운임	본사안 100%	396,062	873,835	125,864			1,395,761	916,164
		저단가 조정시	198,031	436,918	125,864			760,813	
	상조회	박스당10원				135,337	508,980	644,317	
		기금 0.45%				135,337	519,018	654,355	
둔산(대)	기타운임	본사안 100%	116,906	388,031	503,855			1,008,792	2,348,604
		저단가 조정시	58,453	194,016	503,855			756,324	
	상조회	박스당10원				306,690	1,304,780	1,611,470	
		기금 0.45%				306,690	1,290,107	1,596,797	

[협의회 기타 의견]

3) 상조회비 이용시 장점

구분	내 용	비고
수수료 체계	기존 수수료 체계 및 수수료 내역에 변화 없음	
개발 수수료		
집하 수수료		
배송 수수료		
기타	별도의 대리점 동의서 징구 필요없음	
	상조회 운영위에서 해당 내역의 약관수정 및 의결로 즉시 시행가능	
	별도의 기구 설치 필요없이 운영위에서 기금운영 가능	
	자차서틀 수수료(정율 적용)의 차감 미발생	
	대리점별 배송물량 대비 공평하게 기금 출연	
	대리점별 배송물량 대비 공평하게 분류비를 수령	
	추후 적용단가 또는 요율에 대한 수시변경 가능	
	배송 위주의 (지원금)대리점들도 동일 적용 / 일체감 형성	

2. 사무국 이전 관련

위 치	중구 세종대로5길 22 (본사 맞은편)	용 도	업무시설
면 적	99.17㎡ (전용 30평)	층 수	2/3층 (계단)
냉난방	개별	월 세	보증금 3천만원 / 월 300만원 (VAT별도)
공과금	별도	관리비	포함



장점

1. 내부 탕비실(수도시설) 완비
2. 본사와의 거리 : 도보 3분이내
3. 건물 주차장 이용 가능 (유료)

단점

1. 회의장 마련을 위한 별도 칸막이 공사 필요
2. 계단 이용

위 치	서울역 뒷편 4거리 횡단보도앞	용 도	업무시설 (본사 맞은편)
면 적	122㎡ (전용 38평)	층 수	6/8층 (E/V)
냉난방	개별 (도시가스)	월 세	보증금 3천만원 / 월 250만원 (VAT별도)
공과금	별도	관리비	50만원



장점

1. 내부 탕비실(수도시설) 완비
2. E/V 설치
3. 6층 단독 사용 (화장실 포함)

단점

1. 회의장 마련을 위한 별도 칸막이 보수공사 필요
2. 본사와의 거리 : 도보 10분 이내
3. 기계식 주차장